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12 선고 2019가합516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

2. B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범준, 김법윤

3. C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임재화, 김혜진

5.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진아영, 김은지

6. F

변론 종결 2021. 6. 10. (피고 1, 2, 4, 5에 대하여)

2021. 6. 24. (피고 3, 6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21. 8. 12.

주 문

1. 가. 피고 A과 소외 G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와 소외 G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1. 체결된 101,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F와 소외 G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F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F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문 제2항 및 제3항

2. 피고 A과 소외 G 주식회사 사이에 2015. 2. 11.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5. 4. 28.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5. 5.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과 소외 G 주식회사 사이에 2015. 4. 24. 체결된 6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D과 소외 G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12.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6. 1.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2016. 1. 29. 체결된 177,403,76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477,403,7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 E과 소외 G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7.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G 주식회사(다음부터 'G'라 한다)는 섬유기계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995. 3. 22.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10. 3. 22. 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피고 D은 1998. 7. 28.부터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6. 26. 사임하였고, 피고 C는 2010. 8. 9.부터 G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6. 27.부터는 G의 대표자가 되었다. 피고 D은 2015년 G 주식 10,500주(지분율 30%)를, 피고 C는 G 주식 9,450주(지분율 27%)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A은 피고 C의 친형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여동생의 배우자이다.

나. G 소유의 부동산 및 이에 설정된 담보권 등

G는 대구 달성군 I 공장용지 12,551㎡, J 공장용지 314㎡ 및 위 각 토지 지상 공장건물(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주식회사 K이 2012. 3. 28. 설정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의 근저당권, ②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6. 29. 설정한 채권최고액 710,000,000원의 근저당권, ③ 한국전력공사가 2013. 9. 13. 한 청구금액 19,592,680원의 가압류, ④ L이 2014. 7. 11. 한 청구금액 27,750,000원의 가압류가 있었다. 한편 G의 채권자 M의 승계인 N이 2014.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G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등

- 1) G는 2015. 2. 10. 1) 주식회사 O(다음부터 'O'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5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O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여러 장의 수표(다음부터 '제1쟁점수표'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한편 위 매매계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는 승계하지 아니하고 잔금 지급 시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2) G는 제1쟁점수표 중 300,000,000원(다음부터 '제1수표'라 한다)을 피고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A은 2015. 2. 11. 이를 지급제시하였다.
- 3) G는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O으로부터 G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2015. 4. 21. 159,592,680원, 2015. 4. 23. 2,949,403,761원을 지급받았다.
- 4) O은 나머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2015. 4. 23. 주식회사 K에 G의 채무 1,404,138,630원을 변제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G의 채무 586,796,971원을 변제하였다.
- 5) G는 2015. 4. 21. 한국전력공사에 체납요금 19,592,680원을 납부하였고, 2015. 3. 10. L을 피공탁자로 하여 체불임금 등 129,720,48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5. 4. 23. M에게 체불임금 115,000,000원을 포함하여 1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6) G는 Q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5. 2. 10.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4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4. 23. 잔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14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7) G는 2015. 4. 23.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G의 피고 B, A, F에 대한 수표 교부

1) G는 2015. 4. 23. 이 사건 계좌에서 2,878,000,000원을 여러 장의 수표(다음부터 '제2쟁점수표'라 한다)로 인출하였다.

2) 한편 피고 B, A, F는 제2쟁점수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제시하였다.

B	2015. 4. 24.	600,000,000	다음부터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를 '제2수표'라 한다.
A	2015. 4. 28.	200,000,000	다음부터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를 '제3수표'라 한다.
F	2015. 5. 6.	200,000,000	다음부터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를 '제4수표'라 한다.

마.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G 경영권 및 주식 이전

피고 D는 2015. 5. 8. 피고 C 및 G와 사이에 피고 D이 G에 대한 경영권 및 보유주식을 피고 C에게 977,403,761원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피고 D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15. 5. 6. 제2쟁점수표 중 400,000,000원의 수표(다음부터 '제5수표'라 한다), 2015. 5. 8. 제2쟁점수표 중 200,000,000원의 수표(다음부터 '제7수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합의서

1. G와 피고 C는 연대하여 피고 D에게 2015. 12. 31.까지 977,403,761원을 지급한다.
2. 피고 D는 제1항의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G의 경영권을 피고 C에게 완전 이전하고, 본 계약의 성립 후 회사운영에 관여하거나 기타 회사의 법률적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피고 D의 보유주식은 피고 C에게 전부 이전한다. 단, 주식이전과 관련된 양도소득의 기타 제반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 중 4억 원은 2015. 5. 6.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2억 원은 본 합의서의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377,403,761원은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 단, 위 금원 중 1억 원은 R(S)의 주식대금 1억 원 지급에 사용하고 이 부분은 상호확인한 후 처리한다.
5. N(실질적으로 M)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액은 G에서 회수하여 (주)T의 기업은행대출금에 관한 피고 D의 보증채무변제비용으로 우선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 D에게 지급한다.

6. 피고 C는 G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법인세, 회사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및 주주들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세금신고납부, 기타 일체의 제세공과금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그 책임으로 집행한다.

바. 피고 E, C, D, A의 수표 지급제시

피고 E, C, D, A은 제2쟁점수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급제시하였다.

E	2015. 5. 7.	400,000,000	'제5수표'이다.
C	2015. 5. 11.	101,000,000	다음부터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를 '제6수표'라 한다.
D	2015. 5. 12.	200,000,000	'제7수표'이다.
A	2015. 5. 13.	100,000,000	다음부터 당시 지급제시된 수표를 '제8수표'라 한다.

사. G의 금전 대여 및 그 변제

1) G는 2015. 5. 13. 주식회사 U(다음부터 'U'이라 한다)과 사이에 'G가 U에게 2016. 4. 30.까지 789,000,000원을 대여하고, U은 2015. 12. 31.까지 피고 D에게 277,403,761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 중 일부의 변제에 갈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G는 2015. 5. 13. U에 78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U은 G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D에게 부담하는 277,403,761원(= D에게 지급할 대금 877,403,761원²⁾ - 지급된 제5, 7수표 금액 600,000,000원)에 관하여, D에게 2016. 1. 13. 100,000,000원(다음부터 '제9금원'이라 한다), 2016. 1. 29. 177,403,761원(다음부터 '제10금원'이라 한다)을 G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

아. 원고의 G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G에 2016. 5. 2. 2015년 법인세 402,455,380원을 고지하였고, 2018. 2. 13. 추가로 2015년 법인세 138,233,940원을 고지하였으며, 2018. 2. 13.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49,099,8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G가 체납한 조세채무(다음부터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015	법인세	2016. 5. 2.	2016. 5. 31.	402,455,380	563,205,950
2015	법인세	2018. 2. 13.	2018. 2. 28.	138,233,940	162,493,900
2015 1기	부가가치세	2018. 2. 13.	2018. 2. 28.	249,099,890	292,816,790
합계	789,789,210	1,018,516,640			

[인정근거] 피고 A, B, D, E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22 내지 3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4, 10, 12,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F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의 채무자인 G가 피고들에게 제1 내지 8수표, 제9, 10금원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1 내지 8수표의 각 지급제시일자3) 또는 제9, 10금원의 지급일자를 증여계약일로 하여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제1 내지 8수표, 제9, 10금원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원고의 피고 A,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⁴⁾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2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의 G에 대한 2015년 법인세 채권은 2015. 12. 31.,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2015. 6. 30.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다.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G에 대한 합계 1,018,516,64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피고들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의 존부 및 그 성격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참조).

나) 피고 A에 대한 2015. 2. 11.자, 2015. 4. 28.자, 2015. 5. 13.자 증여계약 및 피고 B에 대한 2015. 4. 24.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각 증여계약 존재)

피고 A, B은, 피고 A이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필요한 옹벽공사 등의 비용을 지출하고, 그 대금 및 수고비(380,000,000원) 등 명목으로 G로부터 피고 A이 직접 제1, 3, 8수표를 지급받고 피고 B을 통해 제2수표를 지급받은 것이지 이를 G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G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226,523,000원 상당의 공사비용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② 피고 A이 G의 위임을 받아 G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공사비용을 피고 A, B이 직접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 A이 G로부터 매매 위임에 따른 수고비로 피고 A의 주장과 같이 38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 A은 G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공사비용 및 수고비 등을 제외한 567,000,000원은 G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는 없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대금 및 수고비 등 명목으로 피고 A, B에게 제1, 2, 3, 8수표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 C와 피고 A,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표의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피고 D에 대한 2015. 5. 12.자, 2016. 1. 13.자, 2016. 1. 29.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각 증여계약 부존재)

피고 D은 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G에 대여한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변제로 177,403,761원 및 피고 D이 보유한 G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700,000,000원을 지급받았거나, ② 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법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77,403,761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G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G로부터 2015. 5. 6. 제5수표(400,000,000원)5), 2015. 5. 8.

제7수표(200,000,000원)6) 를 교부받고, G의 대여금채무자 U으로부터 2016. 1. 13.

100,000,000원(제9금원), 2016. 1. 29. 177,403,761원(제10금원)을 지급받아 합계

877,403,76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 C가 피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G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877,403,761원(= 977,403,761원 - R에게 지급할 주식대금

100,000,000원)을 피고 C와 연대하여 피고 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주식 및 경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G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다(한편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G가 피고 D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또는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G와 피고 D 사이에 위 금원 등에 대하여

증여계약 체결 및 그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G가 주식 및 경영권 매수인인 피고 C와

함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가 피고 C에 대한 증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라) 피고 E에 대한 2015. 5. 7.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증여계약 부존재)

원고는 피고 E이 2015. 5. 7. 제5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을 근거로 G가 제5수표를 E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G로부터

제5수표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 D으로부터 종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118,000,000원)

및 새로운 차용금 명목(282,000,000원)으로 제5수표를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G로부터 2015. 5. 6. 제5수표를

지급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G가 제5수표를 피고 E에게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G와 피고 E 사이에 제5수표에 관한 증여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G로부터 2015. 5. 6. 제5수표를 지급받아

그 무렵 피고 E에게 다시 지급하였고, 피고 E은 2015. 5. 7. 이를 지급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에 대한 각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재산처분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① 피고들 중 일부가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피고들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경우도 다수이다.

② 피고들이 2015. 4. 24.부터 2015. 5. 13.까지 사이에 지급제시한 수표들이 모두 2015. 4. 23. G의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된 제2쟁점수표 중 일부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G의 피고들에 대한 지급행위나 그에 따른 피고들의 지급제시 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G의 피고 A, B에 대한 처분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 D에 대한 처분행위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등 그 성격이나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G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피고들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가) 피고 A에 대한 2015. 2. 11.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채무초과 불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의 피고 A에 대한 2015. 2. 11.자 제1수표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 계약금7) 계약금 중 100,000,000원은 2015. 2. 10. Q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300,000,000원	이 사건 조세채무8)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참조).	1,018,516,640원
이 사건 부동산 잔금채권	5,100,000,000원	주식회사 K에 대한 채무	1,404,138,63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586,796,971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	19,592,680원
		L에 대한 채무	129,720,480원
		M에 대한 채무	115,000,000원
합계	5,400,000,000원	합계	3,273,765,401원

따라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 A에 대한 2015. 2. 11.자 지급행위 당시 G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2015. 4. 24.자 증여계약, 피고 A에 대한 2015. 4. 28.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채무초과 불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의 피고 B에 대한 2015. 4. 24.자 제2수표 지급행위 및 피고 A에 대한 2015. 4. 28.자 제3수표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O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금 중 남은 금액	2,657,683,281원9) O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금 3,108,996,441원(= 159,592,680원 + 2,949,403,761원)에서 한국전력공사, L, M에 대한 채무변제금 합계 311,313,160원(= 한국전력공사 19,592,680원 + L 129,720,480원 + M 162,000,000원) 및 Q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4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이 사건 조세채무	1,018,516,640원
----------------------------	---	-----------	----------------

따라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고 그 차액은 1,639,166,641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 B에 대한 2015. 4. 24.자 제2수표 지급행위 및 피고 A에 대한 2015. 4. 28.자 제3수표 지급행위 당시 G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A에 대한 2015. 5. 13.자 증여계약 취소청구 부분(채무초과 및 사해의사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G의 피고 A에 대한 2015. 5. 13.자 제8수표 지급행위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위 2015. 4. 24. 및 2015. 4. 28. 당시 적극재산에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956,683,281원10) 위 2,657,683,281원에서 수표를 발급하여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각 금원 합계 1,701,000,000원(= 2015. 4. 24. 제2수표 600,000,000원 + 2015. 4. 28. 제3수표 200,000,000원 + 2015. 5. 6. 제4수표 200,000,000원 + 2015. 5. 6. 제5수표 400,000,000원 + 2015. 5. 8. 제7수표 200,000,000원 + 2015. 5. 11. 제6수표 101,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사건 조세채무	1,018,516,640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피고 D에 대한 채무	277,403,761원11) 877,403,761원에서 제5수표로 지급된 400,000,000원, 제7수표로 지급된 2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담하는 R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
합계	956,683,281원	합계	1,395,920,401원

그렇다면 G의 피고 A에 대한 2015. 5. 13.자 제8수표 지급행위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 A이 G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 피고 C와 형제관계에 있는 점, G가 피고 A에게 증여한 전체 금원의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G는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G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과 G 사이에 2015. 5. 13. 체결된 1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의 피고 C,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G가 2015. 5. 6. 피고 F에게 제4수표(200,000,000원)를, 2015. 5. 12. 피고 C에게 제5수표(101,000,000원)를 각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G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C, F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F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해당 증여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 F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따라서 피고 C와 G 사이에 2015. 5. 11. 체결된 101,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F와 G 사이에 2015. 5. 6.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F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만호

판사지선경

판사우영식

- 1) 단,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5. 3. 10.이다.
- 2) 매매대금 977,403,761원에서 R에게 지급할 주식대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3) 지급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제시일자를 증여계약일자 및 지급일자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 4)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참조
- 5) 2015. 5. 7. 피고 E이 지급제시하였다.
- 6) 2015. 5. 12. 피고 D이 지급제시하였다.
- 7) 계약금 중 100,000,000원은 2015. 2. 10. Q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 8)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참조).

9) O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잔금 3,108,996,441원(= 159,592,680원 + 2,949,403,761원)에서 한국전력공사, L, M에 대한 채무변제금 합계 311,313,160원(= 한국전력공사 19,592,680원 + L 129,720,480원 + M 162,000,000원) 및 Q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4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10) 위 2,657,683,281원에서 수표를 발급하여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각 금원 합계 1,701,000,000원(= 2015. 4. 24. 제2수표 600,000,000원 + 2015. 4. 28. 제3수표 200,000,000원 + 2015. 5. 6. 제4수표 200,000,000원 + 2015. 5. 6. 제5수표 400,000,000원 + 2015. 5. 8. 제7수표 200,000,000원 + 2015. 5. 11. 제6수표 101,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11) 877,403,761원에서 제5수표로 지급된 400,000,000원, 제7수표로 지급된 2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